"지역산업 기반 플라즈마 R&BD 사업 거점화"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철원군자체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른 지적사항 업무연찬 실시

1. 철원군 기획감사실-12151(2020.08.03.)호 관련입니다.
2. 위관련문서 『2020년 철원군 자체 종합감사결과 알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지시한 2건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처분지시사항 :
○ 처분지시 1 (주의처분) 건설업 미등록 업체계약체결 및 분리발주 부적정
○ 처분지시 2 (주의처분)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업무연찬실시 :
○ 업무연찬방법 : 사내 그룹웨어 공지사항 게시(전직원 열람)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메일로 업무연찬 안내 및 자료 발송
* 코로나19관련 비대면으로 업무연찬 실시
○ 게시자료 : 2020년 철원군자체종합감사_본처분지시서(2건)

붙임 2020년 철원군자체종합감사_본처분지시서(2건). 끝.

09/21

경영지원실장 **신계선** 경영지원본부장 **안남일** 연구원장 **황명근**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2187 (2020.9.21.) 접수
우 24047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620 (지포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http://www.cpri.re.kr
전화 033-452-9709 전송 033-452-9710 / ksshin@cpri.re.kr / 공개

2020 철원군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업무연찬자료 목록

연번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지 적 건 명
계					2건
1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2019	주의		건설업 미등록 업체계약체결 및 분리발주 부적정
2	"	2019	주의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일련번호: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건설업 미등록 업체계약체결 및 분리발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사 업 량	사업기간	계약일	계약(시공)업체	비 고
2019	000 기반 시설 개선 공사	19,932	판넬 설치 324㎡, 내선공사 1식	1.4~1.28	1.2	000(주)	

2. 내 용

가.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체결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및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

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000 기반시설 개선공사』를 계약 체결하면서 건설업체 정보 조회를 하여 관련 업종의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한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시공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전문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항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 발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000 기반시설 개선공사』를 계약 체결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전기공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했음에도 전기업종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한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한 사실이 있다.

【 처분지시 】

○ 향후 공사 계약 체결시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있음(주의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부 서 명】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시 행 년 도】 2019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사 업 량	사업기간	계약일	계약(시공)업체	비 고
2019	000 장비 000 제작	34,100	000 장비 000 제작	8.12~11.29	8.12	000(주)	
2019	000 장비 000 제작	34,100	000 장비 000 제작	8.12~11.29	8.12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하면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 또는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88호(2017.4.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 “다” 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000 장비 000 제작과 000 장비 000 제작의 물품을 제조 구매 하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자체(수의)계약을 통하여 000(주) 대표자 000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지시 】

○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는 분할발주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중 주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